

2026년 대비 법무사 1순환 민사소송법

강의계획서

일정 2026년 1월 20일(월) ~ 2월 10일(화), 15회

교재 수험 민사소송법의 이해(학연, 2025 新刊) + 사례자료(제공) + 법무사 법전

강의시간

오전 9:00 ~ 12:30

강사

김 춘 환

민사소송법 최선의 선택 !!!

김춘환 민사법을 믿고 따라오시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

前 月刊 考試界 기획위원

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사소송법)

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現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 법학과, 성신여대 법학과 특강 강사

現 월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전임교수

現 월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現 공단기 법원직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

2. 저서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1판(2024), 학연 刊

Fortune 完打 민소법의 종결 (2024), ACL 刊

해커스 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2025), 해커스 刊

해커스 감정평가사 민법(2025), 해커스 刊

Fortune 완타 민법(2025), 학연 刊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사법연구소,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법무사 2차 민소법의 특징

1. 판례 위주의 출제

현재 시점에서 법무사 민소법 문제의 특징은 중요 判例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면서, 그 판례에 대한 쟁점을 문제로 삼아 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甲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금 1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10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乙 회사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乙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乙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상고심의 환송판결은 종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어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이 문제는 유명한 대판(전합) 1995.2.14. 93재다27,34(반소) 판례를 출제하였고, 그 쟁점은 재심의 소의 ‘대상적격’인 확정이 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2019. 4. 1. 甲은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20. 4. 1. 甲은 乙을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아래 각 사안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또한 2024년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도 甲에게 1억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1. (추가된 사실관계) 이 사건 소에서 乙은 소구채권의 부존재 항변 및 상계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甲의 소구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乙의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경우 乙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그리고 2025년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법인에 대하여 1억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丁 역시 乙에 대하여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 견해의 대립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甲은 丙법인의 대표자를 A로 표시하였고, 제1심법원은 A를 丙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소장 부분을 송달한 후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이 甲의 전부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丙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A가 丙법인을 대표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의 丙법인에 대한 소제기 전 丙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甲, 丙법인 및 항소심법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변론을 종결하였다. 이후 항소심법원은 A에게 丙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丙법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 경우 제1심법원 판결 및 항소심법원 판결의 적법성을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2. 문제의 형식

문제의 형식으로는 결론과 이유(근거)를 설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목차를 달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I. 결론

甲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II. 이유

1. 문제점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확정'된 '종국' 판결인지가 문제 된다.

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여부(대판(전) 1995.02.14. 93제다27·34)

원래 중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중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는 달리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중간판결이라고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하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3.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중국판결”인지 여부(대판(전) 1995.02.14. 93재다27·34)

재심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중국판결”이란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그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통상의 절차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기판력이나 형성력, 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확정된 중국판결”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중국판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급에서 이탈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게 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은 아니며, 또한 환송판결도 동일절차 내에서는 철회,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속력이 인정됨은 물론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기속력은 인정되지만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재판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 하여 보라는 중국적 판단을 유보한 재판의 성질상 직접적으로 기판력이나 실체법상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중국판결”이라 할 수 없다. 중국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심급을 이탈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은 분명하지만 중국판결에 해당하는 모든 판결이 바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통상의 불복방법인 상소제도와 비상 불복방법인 재심제도의 본래의 목적상의 차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따라서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중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중국판결이기는 하지만, 확정된 중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아, 甲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I. 결론

甲의 2021. 4. 1. 소제기는 적법하다(제259조).

II. 이유

1. 문제점 - 일부청구와 중복소송(제259조)

중복소제기의 금지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른다(제259조). 이의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동일 ② 사건(소송물)의 동일 ③ 전소 계속 중의 후소제기가 있다. 사안에서는 ① 갑과 을로 당사자가 동일하며 ③ 전소가 상고심에 소송계속 중 후소가 제기가 되었으므로, 이의 요건은 충족한다. 문제는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원만을 청구한 것은 일부청구이고, 이 경우 잔부청구인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원

과의 관계가 소송물이 동일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학설은 ①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바 없어도 잔부와의 관계에서 청구한 일부분만 소송물이 된다는 일부청구긍정설, ② 이행기의 차이나 담보권이 설정여부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전부청구가 소송물이 되는 것이며 일부청구는 단지 인용한도액을 확정된 것에 그친다는 일부청구부정설, ③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이라면 그 일부만 소송물이 되지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의 청구가 소송물이 된다는 명시적 일부청구설(절충설)이 있다. 判例는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 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5.04.09. 84다552).”고 하여 중복소송에서도 명시적 일부청구설의 입장이다.

3. 사안의 경우

甲은 소재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으므로, 전소의 소송물은 700만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나머지 치료비 청구인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

I. 결론

乙은 항소의 이익이 있다.

II. 이유

1. 상소의 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2. 3. 27. 91다40696, 형식적 불복설).

2. 원칙 및 예외

즉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 이유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¹⁾. 기판력은 주문의 판단에만 생기기 때문에(제216조 1항) 어떠한 이유로 승소하여도 승소의 법률효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지만,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용하는 판결이 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피고의 경우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이 경우 원고의 소구채권(=수동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유변경이 되어 승소하는 것이 피고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소의 이익이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상계의 항변은 단독행위로 상계권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계정산의 합의는 제외된다.

3. 判例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제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18.08.30. 2016다46338·46345).

I. 제1심법원 판결 및 항소심법원 판결의 적법성

제1심법원 판결 및 항소심판결의 위법하다.

II. 논거

1. 대표권의 직권조사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판 2022. 4. 28. 2021다306904).

2. 제1심판결의 위법성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사안의 대표자 A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이 있었으므로,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법원은 A를 丙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소장 부분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대표자에게는 그 소송에 관하여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장 부분이 단체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A가 丙법인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甲이 그 대표자 A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대판 2024. 4. 12. 2023다313241). 그러나 그 개개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무권대리(대표)를 간과한 판결은 유효하고, 위법하게 된다(제424조 1항 4호, 제451조 1항 3호 참고).

3.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

-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소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2014.04.10. 2013다54390).

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판 2024. 4. 12. 2023다313241). 따라서 항소심절차 진행 중에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원고甲에게 보정을 명하여 소장에 표시된 피고丙법인의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정하도록 하고, 보정이 이루어지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함으로써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의 판결은 위 보정을 하게 하는 조치를 얹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제423조).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위 판례 중 밑줄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이 이해, 암기한 내용에 대해 답안지에 ‘현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3. 공부방법

(1) 강사의 강의에 충실

현재는 법무사 문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 강사분들이 출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법원행정고시, 사무관승진, 서기보 시험도 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서기보시험에 출제하였던 (객관식) 판례 등을 변형하여, 2차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강합니다. 특히 그 출제 판례에 대해서는 서기보시험에서 민사소송법 1위를 하고 있는 김춘환 강사가 누구보다 判例 등을 제일 잘 분석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강의를 잘 따라오면, 법무사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여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수험 민사소송법의 이해

법무사 민사소송법은 빠른 시간 내에 민사소송법 전반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한 ‘수험 민사소송법의 이해’ 교재는 빠른 시간에 민사소송법 전반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므로, 법무사 민소법 강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교재를 습득하면 적어도 법무사 시험을 보는 경우 ‘합격’을 위한 실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논리전개 내지 논증의 틀(폼)

(1) 이하의 내용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²⁾의 글이니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2)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에서 1.의의 2.취지, 근거, 법적 성질, 기능 3. 요건 4. 효과 식의 정형적인 폼이 있듯이, 사례 문제에서도 그 사례 문제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의 폼을 미리 만들어 두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

2) 김○○, P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제43회·제48회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1. 문제의 분석(문제점의 추출⇒논점의 문제제기, 문제의 소재)
2. 논점 전개
(1) 정의, 원칙, 예외(수정), 규범
(2) 문제로부터 요건정립, 취지, 논점의 결론, 반대설, 반대설 비판
(3) 전제, 이론적 귀결, 부당성 지적, 규범, 허용성, 특수성
3. 사안 적용 - 삼단논법의 귀결
4. 사안 해결 -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 진요

5. 공부방법상의 유의점

- (1) 제도나 논점에 대해 왜(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취지 등에 대하여 생각한다.
- (2) 유사한 제도나 논점의 상호 비교, 구별 표지 정확하게 이해, 아이덴티티 확립
- (3) 제도나 논점의 골격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공부가 더해 감에 따라 살을 붙혀 나감
- (4) KEY WORD 중심의 공부
- (5) 판례 태도 정확하게 기억(우리 판례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 (6)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말고(다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모든 공부는 결국 시험장에서의 답안작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평소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히 하고 책을 읽어 나갈 때에도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고(효율적인 마킹) 결과물을 간결하게 머리속에 정리해 두고 자주 되새김질을 한다.

회수	일시	중요쟁점	교재
제1회	1/20(화)	오리엔테이션, 민사소송절차 개요 및 중요 조문 해설, 법무사 시험 분석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무변론판결(司 45, 57)	
제2회	1/21(수)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 5. 관할 -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勞 10회), 변론관할, 司 34, 50, 55, 勞 11회) 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	~ p. 78
제3회	1/23(금)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勞 11회),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司 54), 제3자 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53,54)]	~ p. 98
제4회		10. 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	~ p. 120

	1/23(금)	11.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 *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파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 法 2022 기출) 12.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무권대리인(司 55) 13.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제5회	1/24(토)	14.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 15.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16.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 17.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 * 소송구조 18.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 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 20.소제기의 실제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 p. 152
제6회	1/26(월)	21.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 22.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56, 辨 44) 23.채무부존재확인 소와 처분권주의(辨 44) 24.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 25.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 26.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勞 10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 57), 석명권(勞 11회) 27.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	~ p. 179
제7회	1/27(화)	* 적시제출주의, 이의권 *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28.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57) 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 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司 56) 31.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 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57, 法 13) 33.무변론판결(司 45) * 추후보완제도, 송달(司 55) 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56)	~ p. 229
제8회	1/30(금)	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 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 *유일한 증거(辨 47) 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勞 9), 서면증언의 특례(司 46) *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	~ p. 268

		38.문서제출명령(司 47) 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 증거보전(辨 46)	
제9회	1/31(토)	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41. 자유심증주의(勞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 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 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명(辨 39) 44.소송종료선언(司 43) 45.재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 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 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관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 48.화해권고결정 *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	~ p. 323
제10회	2/2(월)	49.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司 56) 50.기관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 51.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 5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 53.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 勞 10회) 54.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관력의 시적한계(司 43, 49) 55.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관력의 표준시 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 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 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체책(司 40, 55) 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체책과 실제법상 구체책(司 40) * 가집행선고, 소송비용	~ p. 365
제11회	2/3(화)	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 *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 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 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辨 46) *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 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 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 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 66.중간확인인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 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司 46) 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	~ p. 386
제12회	2/4(수)	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거공동, 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56, 勞 1) 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 57, 勞 11회) 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55) 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57)	~ p. 403

		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된 선정의 인정여부 75.선정당사자-선정 후의 선정자의 지위	
제13회	2/6(금)	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辨 45) 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 * 공동소송참가(勞 10회)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 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 勞 9) 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 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 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 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 *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司 56)	~ p. 431
제14회	2/9(월)	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 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 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 87.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57) 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 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 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	~ p. 457
제15회	2/10(화)	91.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55) *특별항고(法 11) 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 94. 간이소송절차(소액사건, 독촉절차) 95. 공시최고절차	~ p. 484